

고성군공중이용시설등관리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595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9. 11. 19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1999. 11. 19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1999. 11. 26

총무위원회 상정 · 의결

2. 제안사유

- 종전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공포 (1999.2.8 법률 제5839호)되어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동법 제22조 및 제23조에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고 있으며,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조례로서 폐지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 및 제23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종전의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 공중위생시설 관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산정, 부과, 징수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고,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조례로서 존치 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폐지함이 타당할 것이라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없음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1999. 11. 2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